



보건복지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3. 2. 28.(화)		
담당 부서	장애인서비스과	책임자	과장	백경순	(044-202-3340)
		담당자	사무관	유운용	(044-202-3350)

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

-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2.27)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의 장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·취소, 결격사유 등을 마련하는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개정안이 2월 27일(월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그간에는 관련 법령 및 제도*를 준용하여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*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, 장애아 돌보미는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지원법 준용

-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, 마약류 중독, 벌금·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,(제21조의2)

-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, 벌금·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명확화하였다.(제24조의3)

- 또한,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·유기 및 고의·중과실로 신체·재산상 손해, 알선·유인 및 부정수급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, 장애인학대로 처벌 받는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.(제21조의2)
- 아울러,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(제35조의2)
 -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아 돌봄 및 장애아 가족에 대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·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(제8조제1항제5호의2)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.
-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상 인원을 전년 대비 1만 명(6.9만 명→7.9만 명) 확대하고 이용권(바우처) 월 지원액을 3만 원 인상(최대 22만 원→25만 원)하였다.
- 이번 법률개정으로 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(장애아 돌봄) 사업은 중증 장애아동 양육자가 질병,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돌보미를 파견·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연 960시간(월 80시간)으로 확대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.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아 돌보미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해져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관련 사업 개요

<별첨>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

붙임

관련 사업 개요

□ 발달재활서비스

- (목적) 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(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)
- (지원대상)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만18세 미만/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아동
 - *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,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

- (사업규모) '23년 1,272억 원, 지원인원 79,000명

- (지원금액)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 원 상당(본인부담* 포함)의 바우처 제공

소득기준	총 구매력		바우처 지원액	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	월 25만 원	=	월 25만 원	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			월 23만 원	2만원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			월 21만 원	4만원
기준 중위소득 65% 초과 ~ 120% 이하 (라형)			월 19만 원	6만원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180% 이하(마형)			월 17만 원	8만원

* 바우처 月 지원액 3만 원 인상('22년 월 22만 원 → '23년 월 25만 원)

- (서비스 영역)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재활영역
 -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:1 서비스 제공 원칙, 다만, 거주지에 제공 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,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

- (제공기관*) 시·군·구에서 공모를 통하여 지정(장애인복지관, 민간기관 등)

*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,536개('22년말 기준)

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(중증장애아 돌봄)

- (목적) 장애아 가족 구성원에게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
- (사업규모) '23년 47,829백만 원, 8,005명, 연간 960시간
 - * '22.7월 이후 기정 예산 범위 내에서 120시간 확대된 960시간 이용 가능 하도록 조치하였으며, '23년 정규예산에도 960시간 반영
- (사업대상)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(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*)
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의 경우 960시간 범위 내에서 전액 정부지원, 소득기준 초과 시 40% 본인부담(시간당 4,740원)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

	연 960시간 이내	연 960시간 초과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	무료	시간당 11,850원 * 전액 본인 부담
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	시간당 4,740원(본인부담율 40%)	

- * '21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 대해 전액 지원하였으며,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미지원하였으나, '22년부터는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(40%) 도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